

---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플러스연금보험

---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 알리안츠파워플러스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2005년 6월 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선 임 계 리 사 은 원 환

# 사 업 방 법 서 별 지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파워플러스연금보험

### 2. 보험의 세목

구 분	생존연금 지급형태		
적립형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거치형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 3. 보험기간

구 분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부터 Y세(45세 ~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5년 · 10년 · 15년 · 20년)까지
	상속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4. 가입나이

구 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Y)
적립형	5년납 ~ 6년납	만15세 ~ (Y - 13)세 [단, 연금개시나이가 45세 ~ 65세이고 월납보험료가 1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만15세 ~ (Y - 10)세]	45세 ~ 70세
	7년납 ~ Y세납	만15세 ~ (Y - 11)세 [단, 월납보험료가 1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만15세 ~ (Y - 10)세]	
거치형	만15세 ~ (Y - 5)세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 5.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5년납 ~ 전기납(Y세납)	월납
거치형	일시납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를 정하여야 한다. 단, 최저납입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적립형	월납보험료 10만원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나.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단, 추가보험료는 연간(보험년도 기준)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보험가입 후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한도를 적용한다.

## 8. 계약자 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 1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마.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 9.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합니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조정이율의 차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 A.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 (주) ■ I :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 A<sub>6</sub>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sub>0</sub>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B.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 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 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B<sub>i</sub>)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sub>i</sub>(-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sub>i</sub>(-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sub>i</sub>(-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 미만에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공시이율 × 75%
1년 이상 2년 미만	공시이율 × 80%
2년 이상 3년 미만	공시이율 × 85%
3년 이상 4년 미만	공시이율 × 90%
4년 이상 5년 미만	공시이율 × 95%

마.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중도해지시 해지이율 및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로 하고, 보험가입 후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한다.

아.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10. 기타

### 가.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의 추가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일부터 제1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부리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연금지급개시시에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나. 고액계약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고액계약에 대하여 건강검진, 의료자문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적립형 : 월납보험료 30만원 이상

(2)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 3,000만원 이상

###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라. 선납보험료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보험계약 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사.**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적립형 : 월납영업보험료  $\times 12 \times \text{Min}\{\text{납입기간}, 10\}$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

**아.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